

# ESG위원회 규정

Version 2.0



경기도 성남시  
분당구 판교로 310

---



## 목 차

제1장 총칙.....	4
제1조 (목적).....	4
제2조 (적용 범위) .....	4
제3조 (직무와 권한) .....	4
제2장 구성.....	4
제4조 (구성).....	4
제5조 (위원장).....	5
제3장 회의.....	5
제6조 (소집권자).....	5
제7조 (소집절차).....	5
제8조 (결의방법).....	5
제9조 (검토사항).....	6
제10조 (이사회와의 관계) .....	6
제11조 (의사록) .....	6
제4장 보칙.....	7
제12조 (사무국) .....	7
제13조 (규정의 개폐).....	7
부칙 .....	7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운영에 관한 다양한 주제와 쟁점을 발굴 ·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ESG 방향성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하여 ESG 관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, 그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한다.
- ③ 위원회는 ESG 관련 분야의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 ·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실행 · 개선하고, 재무적 · 비재무적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검토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의사결정으로 한다.

- ③ 위원회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회의 결의로 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과반은 사외이사로 한다.

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,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 제9조 (검토사항)

1. 연간 사업계획 및 수정
2. 중장기 계획 및 수정
3.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
  - 자기자본 2% 이상의 타법인 출자, 자산의 취득 및 처분
  - 자기자본 2% 이상의 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, 연구개발투자
  - 자기자본 2% 이상의 영업 양수도
4. 회사 ESG 전략 방향
5. 전년도 ESG 추진 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년도 추진 계획
6. ESG 관련 주요 비재무 리스크 요인 및 이슈 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
7.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
8.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9. ESG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10. 기타 ESG 또는 전략 관련 주요 현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
## 제10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## 제11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

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4장 보칙

### 제12조 (사무국)

- ① 위원회의 사무국은 기획조직으로 한다.
- ②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- ③ 사무국은 ESG, 법무, 재무, 인사 부서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 현황 자료 및 정보 혹은 업무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. 위원회 및 사무국은 각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.
- ④ 사무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⑤ 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13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칙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